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정	2002. 7. 6.	규칙 제383호
개정	2003.12.10.	규칙 제420호
	2004.11. 3.	규칙 제438호
	2005. 3.25.	규칙 제442호
	2005.10.10.	규칙 제460호
	2007. 2.28.	규칙 제486호
	2007. 5.29.	규칙 제489호
	2009. 6.18.	규칙 제506호
	2010. 3. 5.	규칙 제512호
	2011. 1.25.	규칙 제546호
	2011. 7. 1.	규칙 제561호
	2012. 3.12.	규칙 제591호
	2012. 7.30.	규칙 제598호
	2013. 5.23.	규칙 제626호
	2019. 5. 8.	규정 제785호
	2020. 3.27.	규정 제818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1. 1.11.	규정 제8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재계약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교원의 구분) ①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② “연구중점교수”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전임교원 중에서 학문연구를 전담하고 그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수”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창업·취업 지원, 대외기금 수주 활동을 담당하고 그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④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채용당시 구분된 교수영역을 다른 영역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설 2019.5.8.>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임용방법) 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② 공개경쟁채용에 따른 결원보충이 곤란하여 상당기간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기준과 심사기준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8.>
- ③ 채용분야·채용과목·채용예정인원 및 자격요건 등은 교무처장과 행정부서장·부속시설의 장·교과목 담당교수의 협의를 거쳐 교무회 심의 후 총장이 정한다. 단, 필요시 교무처장은 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별도로 교무회에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 ④ 채용공고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15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한다.
- 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채용한다.

제4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삭제>(2011. 7. 1.)

- ②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임용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제1호와 제2호는 교양교직 및 전공 분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문실기 분야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19.5.8.>
 1.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
 2. 관련분야의 저명한 교수 또는 인사로서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4년간 해당분야 국제전문학술지 SCI급(SCI(E), SSCI, A&HCI)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자연계 300% (인문사회 200%)이상인 자(그 중 2편 이상은 단독저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개정 2019.5.8.>
 3. 국가대표선수로 올림픽에서 1회 이상 입상자,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한 자 또는 한국 신기록 이상 수립자(육상, 수영)로서 체육특기자 육성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및 대한체육회 인정기관)에서 지도자(감독·코치 등)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국가대표 감독 또는 코치로 1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는 자(동·하계)
 5. 체육특기자 육성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및 대한체육회 인정기관)에서 지도자(감독·코치 등)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근무기간 중 올림픽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이상 국제대회에서 입상 지도실적 있는 자(동·하계). 단, 제3호의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와 동등하다고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를 말함.

제5조(임용자격)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전문실기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자
3.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6조(임용직급) 신규 임용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교수 이상의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 수 : 4년제 대학 교수 경력이 있는 자
2. 부교수
- 가. 4년제 대학 부교수 경력이 있는 자

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을 합하여 11년 이상인 자 (전문실기에 한함)

3. <삭제>(2012. 7. 22.)

제7조(최초임용기간) ① 신규임용 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하되, 다음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삭제>(2012. 7. 22.)

2. 조교수 : 4년 이내

3. 부교수 또는 교수 : 6년 이내

② 계약제 임용교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조건에 따른다.

③ <삭제>

제8조(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① 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임용 심사기준 제·개정 심의

2. 채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신규채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전문분야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공분야 교원을 참여시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형절차) ① 공개경쟁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등 단계별로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특별채용은 기본자격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및 결과 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신규채용이 확정된 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개한다.

제11조(양성평등)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교과목의 특성과 채용예정 학과 교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교원신규 채용시 특정한 성을 명시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8.>

제3장 재계약 임용

제12조(시기 및 대상자) ① 재계약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② 재계약임용은 계약임용 교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재임용 대상 교원 중에서 계약임용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절차) 재계약임용은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제14조(서류심사) ① 재계약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 제6조(계약기간 중 의무)의 이행실적 자료를 계약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임용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15조(심의) ①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임용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 관련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23.>

②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는 재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하여 적절한 경우 임용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가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임용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원장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용) ①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대하여 필요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경우 임용하되, 재계약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5년 이내
3. 조교수 : 4년 이내
4. <삭제>(2012. 7. 22.)

②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개별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직급 및 정년보장) 재계약임용자의 직급 및 정년보장 등은 이 규정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통보) 재계약임용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재임용

제19조(시기 및 대상자) ①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② 재임용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정년보장임용대상자 제외)으로 한다.

제20조(절차) ① 재임용은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재임용 대상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재임용 예정일 3월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재임용여부를 재임용예정일 2월전 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재임용 연구실적) ①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직전 임용기간 중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200%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년보장임용

제22조(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재직 중인 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2. 교수로 승진임용 되는 자
3. 신규 임용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제23조(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수의 정수는 전임교원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제24조(정년보장 임용) ① 정년보장임용은 제22조의 대상자 중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정년보장임용심사기준은 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별표1의 5호]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25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정년보장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승진임용

제26조(대상자 및 승진소요기간)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된 자로 한다.

1. <삭제>(2012. 7. 22.)
2. 부교수 : 본교에서 조교수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3. 교 수 : 본교에서 부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제27조(승진임용 심사기준) 승진임용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술활동 실적
2.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등

제28조(승진임용 연구실적 및 경기지도실적) ①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해당 직급에서 발표된 전공분야 연구실적물로서 직급별 제출 편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제>(2012. 7 .22.)
 2. 조 교 수 → 부교수 : 300%(연구중점 600%, 산학중점 150%)이상 <개정 2019.5.8.>
 3. 부 교 수 → 교 수 : 400%(연구중점 800%, 산학중점 200%)이상 <개정 2019.5.8.>
- ② 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 ③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평균평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④ 계약제 임용 전문실기 교원과 예능계 교원은 제1항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총장이 인정하는 경기지도실적 또는 기타 연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승진임용시기)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한다.

제30조(계약임용교원의 승진절차) ① 계약으로 임용된 교원(이하“계약임용 교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은 승진임용심사위원회 심의 및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계약임용교원의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승진임용예정일 3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승진임용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임용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 관련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23.>

④ 승진임용심사위원회가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원장이 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총장은 계약임용교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대하여 필요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경우 임용한다. 다만,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7장 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제31조(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 및 책임시수) ①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중점교수”라 한다)는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5.8.>

② 채용형 중점교수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어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5.8.>

③ 지정형 중점교수는 제32조에 따라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중점 교수 또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지정된 전임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5.8.>

④ 중점교수의 강의책임시수는 50%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8.>

제32조(연구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정 및 철회) ①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소속 학과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교무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교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 신청한 전임교원의 교수업적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총장에게 지정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③ 총장은 연구중점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제청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중점교수로 지정하여 산학협력단, 체육과학연구소, 종합인력개발원 등의 부속시설에 결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8.>

④ 총장은 지정형 중점교수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당 중점교수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5.8.>

제8장 보칙

제33조(연구실적)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을 위한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인정기간, 인정을 심사는 별표1의 “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에 따른다.

제34조(교수자격인정)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을 위한 연구실적 환산을 산출기준과 예·체능 및 창작실기계의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자격심사 평정기준은 별표2의 “연구실적환산을 산출기준 및 자격심사 평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제383호, 2002.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육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한국체육대학교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 한국체육대학교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 한국체육대학교교수자격인정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비계약제)은 제28조(승진임용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직급 구분없이 200%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2005.10.1이후 승진대상자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제420호, 2003.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8호, 2004.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실기 계약제 임용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전문실기 계약제 임용 교원의 재계약, 승진임용 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제442호, 2005. 3.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60호, 2005.10.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6호, 2007. 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제 임용교원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최초의 재계약 또는 승진임용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489호, 2007.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은 최초의 재계약

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506호, 2009. 6.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은 2009. 9.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12호, 2010. 3.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46호, 2011. 1.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1호, 2011.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1호, 2012.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8호, 2012. 7.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체육대학교겸임교원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겸임전임강사” 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겸임전임강사는 3년 이상” 을 삭제한다.

② 「한국체육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 규정」 중 제6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명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③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을 “전임교원” 으로 변경한다.

④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하 ” 전임교원 “이라 한다)을 ” 전임교원 “으로 변경한다.

⑤ 「한국체육대학교초빙교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초빙전임강사” 를 삭제하며, 제2항 중 “초빙전임강사는 3년 이상” 을 삭제한다.

⑥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부 칙(제626호, 2013.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85호, 2019. 5.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8호, 2020.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제833호, 2021. 1.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연구실적 심사기준

1. 연구실적물의 범위

- 가. 연구실적물의 형식과 내용은 학술지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나. 연구실적물은 발행된 실적물에 한하며, 일간지(교내신문) 발표 실적물과 게재예정실적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 1) 저서(신규채용에는 양적심사에만 인정)
 - 2) 학술지
 - 3) 논문집
 - 4) 정기간행물(비학술 간행물은 신규 채용시 불인정)
 - 5) 예능계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
 - 6) 게재예정 연구실적물
 - 가) 신규채용 :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나) 승진임용, 재임용 :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게재되어 발간된 연구 실적물만 인정한다.
- 다.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 라. 산학협력 실적(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대외기금 수주 이하 '산학협력 실적'이라 한다)

2. 연구실적물의 인정

- 가.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나. 예·체능계는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 다. 학술연구조성비 지급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 보고서
- 라. 전문대학 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집필된 교재
- 마.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 1) 1인 연구(편찬) : 100%
 - 2) 2인 공동연구(편찬) : 70%
 - 3) 3인 공동연구(편찬) : 50%
 - 4) 4인 이상 공동연구(편찬) : 30%
 - 5) 석사학위 취득 논문(신규 채용시 불인정) : 100%
 - 6) 박사학위 취득 논문(신규 채용시 불인정) : 200%단,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논문을 2인(지도교수 포함)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 취득자 단독논문으로 인정한다.

- 7) 1인 편저 또는 번역서는 20%로 하되, 2인 이상 편저 또는 번역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바. 예·체능계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에 대한 연구실적물은 [별표 2] 자격심사 평정기준의 연구업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평점 1점을 연구실적물 100%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 예·체능계 실기분야의 연구실적은 총 연구실적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문실기교원은 신규임용의 경우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적용하고 재계약,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의 경우는 본 심사기준 제5호를 적용한다.
- 사.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기간이 중복되는 연구실적물 평가 점수는 서로 대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아. 산학협력 세부실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연구실적 심사

- 가.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박사학위취득논문,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국제학술지(SCOPUS)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나.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각 편이 평균 "우"이상이어야 한다.
- 다. 연구실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라. 신규임용은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연구실적 편수 및 인정기간

- 가. 신규임용 :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나. 재계약임용 : 계약제 교원임용계약서(별지 서식) 제6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다. 재임용 : 이 규정 제21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라. 승진임용 : 이 규정 제28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마. 정년보장임용 : 이 규정 제24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
 -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발표된 논문에 한하되,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5. 임용구분별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임용구분	직급별	기 간	연구실적	업적평가 점수	임용심사 평정점수	비 고
승진임용	조교수 → 부교수	4년	300%이상 (연구전담 6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부교수 → 교 수	5년	400%이상 (연구전담 8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재계약임용 (재임용)	조교수 → 부교수	4년	300%이상 (연구전담 6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 재임용대상 (비계약제)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실적물량은 200%임
	부교수 → 교 수	5년	400%이상 (연구전담 8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정년보장 임용	부교수 → 교 수	5년	600%이상 - 연구전담 1000%이상 - 전문실기는 계약조건외 120%이상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신설
연구실적 인정범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적물은 학술논문 또는 학술저서에 한함. 2. 논문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학술지(G7국가 발행 SCOPUS) 또는 한국연구재단(후보 포함)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또는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에서 인정하는 공연실적 인정(무용). 4. 전문실기 교원은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하며, 논문 또는 저서의 연구 업적평가점수 20점이상 포함(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제33조 또는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제22조). 5. 특정분야의 경우 계약으로 정함. 6. 비계약제 임용교원 논문의 경우 1/2이상은 한국연구재단(후보 포함) 등록 학술지 이어야 함. 7. 연구실적은 직전 임용기간에 발표한 전공분야 연구실적물의 합계를 말함. 8. 업적평가점수는 최근 3년간의 업적 평균평점을 말함. 9. 임용심사 평정점수는 전임교원재임용심사에관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사평정표에 의거 평가 받은 점수를 말함. 10. 산학협력실적 반영비율은 따로 정한다. 					

교육경력·연구경력 산출기준 및 자격심사 평정기준

1. 교육경력·연구경력 산출기준

경 령 내 용	인정환산율(%)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연구경력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시설 근무경력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의 연구원(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①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근무경력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 근무 경력	60
(2)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30~50
(3)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5)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전문대학 포함)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체육코치	70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 0.7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년수 × 0.7
경 령 내 용	인정환산율(%)
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규정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근무경력 (1)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근무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3)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① 중소기업법 제2조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5)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6)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의 개업기간	50 (단, 변호사 개업기간은 70)
(7) 한국해양대학, 부경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9)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50
(10)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 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병원에서 전임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	70

2. 자격심사 평정기준

연 구 업 적	평 점
<p>1. 미 술</p> <p>가. 국제전·국전·상공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1회 1점 ○ 특선이상 1회 2점 ○ 국제전 출품 1회 0.5점 <p>나. 지역규모공모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이상 2회 1점 ○ 입선 4회 1점 <p>다. 공인된 개인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전 1회 1점 ○ 2인전 1회 0.5점 ○ 기획전 1회 0.5점 <p>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1회 0.3점 ○ 특선이상 1회 1점 <p>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1점</p> <p>바. 국제전 심사위원회 1회 1점</p> <p>사. 미술대전등 심사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1점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0.5점 ○ 시·도단위 미술전람회심사위원 1회 0.5점 	
<p>2. 음악</p> <p>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 1회 1점</p> <p>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초연 1회 0.7점</p> <p>다.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이상, 3중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1회 0.5점</p> <p>라.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0.3점 ○ 협주곡 협연, 오페라 주역 1회 1점 	

연 구 업 적	평 점
3. 체 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발표회 : 1회 나. 올림픽 출전 다. 전국대회 입상 : 2회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 1회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점 1점 1점 1점 1점
4.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다. 관계분야에 대한 훈장	1점 1점 2점
5.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1회	2점
6. 무용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개인 공연발표(안무)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공연발표(안무)..... 2인 다. 국내·외에서 인정된 공연발표(안무)..... 3인 라. 국내·외에서 인정된 공연발표(안무)..... 4인이상 ※ 공연발표는 공인된 기관에 한함	1점 0.7점 0.5점 0.3점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서

(교양·교직·전공 분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체육대학교총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제 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2조(계약 부서 및 직급) “갑”은 “을”을 한국체육대학교 ()로 임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제2항에 의거 임용(계약)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계약)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4조(급여 및 수당) ①“갑”은 “을”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5조(주당강의책임시간) ①“을”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주당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중 의무) ①“을”은 계약기간 중 교육 및 연구 등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발
2.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
3. 학생지도 및 상담
4. 연구실적물 발표
5. 교내 봉사활동이나 위원회/TF팀 적극 참여
6. 교내 교수법 연수 적극 참여

②“을”은 계약기간 중 제1항의 4호와 관련, 연구실적물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여야 한다.

1. 조 교 수 : 300%이상
2. 부 교 수 : 400%이상

③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국제전문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등재후보)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어야 하며, 저서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④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33조 또는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재계약에 필요한 평균평점 12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7조(지위 및 복무) “을”은 계약기간 중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학내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 6월 전에 재계약 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종료 4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 종료 2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을”은 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갑”은 “을”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을”에게는 대학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을”은 재계약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말에 자동적으로 퇴직 한다.

⑥“을”이 한국체육대학교전임교원임용규정의 승진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승진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조건의 변경) ①“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법령·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한국체육대학교 제규정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회인) 한국체육대학교 교무처장

⑤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제33조 또는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재계약에 필요한 평균평점 120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⑥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한다.

제7조(지위 및 복무) “을”은 계약기간 중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학내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 6월 전에 재계약 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종료 4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 종료 2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을”에게는 대학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재계약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말에 자동적으로 퇴직한다.

⑥ “을”이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의 승진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승진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법령·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한국체육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회인) 한국체육대학교 교무처장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서

(산학협력중점교수 분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체육대학교총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제 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2조(계약 부서 및 직급) “갑”은 “을”을 한국체육대학교()학과()로 임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2 제2항에 의거 임용(계약)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계약)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4조(급여 및 수당) ①“갑”은 “을”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5조(주당강의책임시간) ①“을”은 주당 ()시간 이상 강의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주당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중 의무) ①“을”은 계약기간 중 교육 및 연구 등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2. 대외기금 수주

3. 학생지도 및 상담

4. 교내 봉사활동이나 위원회/TF팀 적극 참여

5. 교내 교수법 연수 적극 참여

②대외기금 수주실적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건에 의한다.

③“을”이 계약기간 중 제1항 2호의 대외기금 수주실적을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대외기금 수주실적을 아래 연구실적물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1. 조 교 수 : 150%이상

2. 부 교 수 : 200%이상

④연구실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국제전문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등재 후보)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어야 하며, 저서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⑤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제33조 또는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